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103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36148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10300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알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우영

피 고 1. E

2. F

3. G

4. H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송영철

피고 1 내지 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용균

5. l

6. J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원고들의 별지목록 제2, 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소외 K에게 별지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1749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16. 1. 28. K에게 변제기 2016. 4. 28., 이자 연 20%로 정하여 36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A은 K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차전13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33,876,399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8. 5.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K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차전13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37,234,96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8. 5. 확정되었다.

라. 원고 D은 K를 상대로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가합10390) 위 법원으로부터 K는 원고 D에게 103,650,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E는 K의 누나, 피고 F, G은 K의 직원, 피고 H는 K의 동생, 피고 I, J는 K의 자식이다.

바. K는 2017. 8. 24.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25.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 K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K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 B, C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위 원고들은 2018. 7. 17. K의 배우자인 L를 상대로 K의 L에 대한 2017. 8. 22.자 건조목 양도 및 2017. 12. 11.자 임야 증여를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가단33677)를 제기한 점, ② K의 L에 대한 건조목 양도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불과 2일 전이고, 임야 증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실을 알았고, K의 소극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피담보채무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점, ④ 위 원고들은 K의 직원으로 일했던 자들로서 피고 F, G 역시 자신들과 같은 K의 직원들이고, 피고 E, H, I, J가 K의 가족 또는 친척이라는 점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위 원고들은 K 및 L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가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0. 2. 13.에서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원고 D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여부

피고들은 원고 D도 원고 A, B, C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D이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K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 A, B, C이 K와 L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전인 2017. 8. 22.을 기준으로 한 K의 적극재산은 총 3,012,720,70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총 2,692,777,597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여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3억원을 K의 소극재산으로 포함하여 보더라도 소극재산은 총 2,992,777,597원에 불과하여 K가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 D 스스로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K의 소극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예비적으로, K와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K와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목록 제2, 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부분은 2020. 2.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별지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는 취지의 피고 E, F, G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 같은 취지의 K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가 제출되었고, 피고 I도 2021. 4. 13. K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 ② 피고들은 갑 제11호증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피고 I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사실확인서에 K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또한 첨부되어 있어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갑 제11호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K는 갑 제11호증에 관하여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실제로 임금 또는 차용금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K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실제로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K에게 별지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목록 제2, 4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별지